

KSD 34 50 25
놀이시설

기존안	수정안	의견
2.2.2 놀이시설 배치 (7) 공동주택단지의 어린이놀이터는 건축물의 외벽 각 부분으로부터 3 m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는 등 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.	(7) 공동주택단지의 어린이놀이터는 건축물의 외벽 각 부분으로부터 7 m 이상 (개구부가 없는 측벽은 3 m) 떨어진 곳에 배치하는 등 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.	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어린이 놀이시설에 관한 구체적인 제시가 없으며, 낙하물 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져가는 상황으로 충분한 안전거리를 반영하여 배치가 필요